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92
----------	-------

발의연월일 : 2025. 6. 26.

발 의 자 : 김 윤 · 모경중 · 이재정
이수진 · 강득구 · 이학영
이병진 · 박지원 · 주철현
전종덕 · 서미화 · 김문수
최혁진 · 전진숙 · 남인순
문대림 · 이광희 · 정진욱
장종태 · 임미애 · 양부남
백승아 · 권향엽 · 박용갑
이재강 · 김남근 · 이재관
오세희 의원(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협, 과중한 업무 부담, 교대근무 여건 악화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인력 기준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수와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원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 사업 수행자 선정 등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관 실태조사의 범위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제33조의3 및 제36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6(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 인력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유형별 적정 환자 수를 정한다. 또한, 교대 근무 인력의 경우 근무조별 실제 근무인력 대비 환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 인력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 지원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 사업 수행자 선정 등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 또는 차등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제1항 전단 중 “의료기관의 실태”를 “의료기관의 실태와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로 한다.

제3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조의6에 따른 의료기관 종류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6(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적정 인력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유형별 적정 환자 수를 정한다. 또한, 교대 근무인력의 경우 근무조별 실제 근무인력 대비 환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u> <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 인력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 지원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 사업 수행자 선정 등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u>

제33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u>의료기관의 실태</u>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②·③ (생략)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u>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 또는 차등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u> ④ 그 밖에 <u>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33조의3(실태조사) ① ----- ----- -----의료기관 <u>의 실태와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u>----- -----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준수사항) -----
--	--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u>	5. 제3조의6에 따른 <u>의료기관 종류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u>
6. ~ 14. (생략)	6. ~ 14. (현행과 같음)